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7 선고 2020가단1316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9. 2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,178,053원 및 그중 4,896,295원에 대하여 2020. 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 확정)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재은

별지